

부산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0가합423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안정환,김원태,이승효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20.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8. 6. 원고가 피고 소유의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발행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으로 9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1조(대상회사)

① 주식발생사: 주식회사 C

제2조(대상주식)

① 주식종류 및 양도수량: 보통주/50,000주

③ 총 거래가액: 금 구억육천만 원정(₩ 960,000,000) (₩19,200/주당)

제3조(양도양수일 및 대금지급)

① 계약금(계약체결시점) 2018. 8. 6. 금액 300,000,000원

② 중도금(민원 해결 후 7일 이내)

③ 잔금(중도금 지급 후 6개월 이내)

특약사항

1) 계약금으로 계약 시에 삼억 원(₩300,000,000)을 지급한다.

2) 주식양도양수 대상법인인 주식회사 C의 발전사업에 대하여 현재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수자인 원고가 민원을 해결한 다음 원고는 7일 이내에 중도금

3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주식 전부를 원고가 지정하는 주주에게 양도하

고 원고가 지정하는 임원을 법인등기부상에 등재하도록 한다.

잔금은 피고의 우발채무보증금으로 360,000,000원을 6개월간 예치하고 6개월이 경과하여도

우발채무발생이 없을 때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8. 8. 7.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2019. 5. 10. 합의해제되었거나,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D에게 이중으로 양도함에 따라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가 이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19. 피고에게 ‘귀하의 계약해제요청이 있었기에 본인으로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계약해제에 따른 300,000,000원 및 공사계획인가 취득비용 등의 반환을 요청하니 반환시점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공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2019. 4. 11.부터 같은 달 30.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각 공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19. 5. 10. 원고에게 ‘민원 해결 및 주식매매를 통해 계약금을 반환할 계약이니 반환받고자 하는 금액을 상세하게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공문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공문에 피고가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공문은 원고가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피고의 의사표시까지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특약사항 2)항에 의하면 민원해결은 원고가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인데, 원고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여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가 먼저 계약해제를 요청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원고의 민원해결의무가 계속 지체되어 원고의 동의하에 새로운

매수인을 찾던 중 원고에게 반환의무의 범위를 문의하는 2019. 5. 10.자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합의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5. 10.경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되었는지 여부

1) 이행불능인지 여부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 2. 소외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C 대표이사 지위 등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200,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법인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2차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20. 1. 10.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소외 E이 C의 대표이사로, 소외 D이 C의 감사로 각 취임한 사실,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식 중 80%는 D이, 나머지 20%는 D이 지정한 소외 주식회사 F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이 사건 주식을 D에게 이중으로 양도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피고의 의무는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면 D이 언제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원고가 조속히 피고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주식을 언제든지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중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오히려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와 D은 지금도 계속하여 C 소유 토지 등을 매수하여 C이 추진하던 발전사업을 영위할 새로운 매수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D과 피고가 새로운 매수인을 찾은 경우 이 사건 주식은 그 새로운 매수인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채무인 ‘민원해결’의 이행을 지체하여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고자 D과 2차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민원해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의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제2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기록상 원고에게 제2양수도계약의 내용 및 목적 등을 설명하고 원고의 동의 내지 허락을 얻어 제2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단지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의 귀책으로 이행불능에 빠진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해제권의 행사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1. 1. 5.자 준비서면이 2021. 1.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원고의 해제권 행사로 2021. 1. 11.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대금 및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4)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기지급한 대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8.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3.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위은숙, 판사 서진희